

노키즈존 운영 실태와 향후 과제¹⁾

김아름 연구위원

본고는 한국사회 내 노키즈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키즈존이 증가하게 된 법적 및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고, 노키즈존 운영업자(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과 아동의 안전사고 문제를 꼽았으며,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며, 사업장 지원,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 공간 조성 등 정책적/사회적으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1. 서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산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1.30명)보다 0.52명(-39.9%) 감소하였다.²⁾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개최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으로 발표하고, “모든 아이를 소중하게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³⁾ 즉,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양육 친화적인 문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 내에 출

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영유아·어린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이란 우리사회에서 2014년 이후 생긴 신조어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며, 최근 성인 고객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로 인한 비상식적 행동, 안전사고의 발생, 특히 영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주에 비추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의 입장을 제한하

1) 본고는 2023년 보건복지부 위탁과제로 진행된 “김아름·권미경·김지현·이혜민(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2) 통계청 보도자료(2023. 7. 11).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p.11.

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3. 3. 28).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p.28.

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노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사이트(yesnokit.ne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매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제주, 서울, 부산 순으로 관광지이거나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되고, 업종별로는 카페와 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CNN, 워싱턴 포스트(WP) 등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이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외신 보도를 통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⁴⁾ 이에 본고는 노키즈존 논의배경을 살펴보고, 운영업체 현황 및 인식 조사와 면담조사를 토대로 향후 과제와 사회적 대응 방안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노키즈존 논의 배경

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며, 대한민국도 이를 비준하였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한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최종견해를 전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차별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제 5-6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에서 “레스토랑 및 카페의 노키즈존(아동접근금지) 증가”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동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 5월)을 수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⁵⁾ 최근에는 백화점 휴게시설에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우수고객 휴게실의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⁶⁾

다. 지자체 사업 현황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은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제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아이가 환영받고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하여 아이와 함께 위축되지 않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등 물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며, 아이들을 환영하는 마크 부착, 서울시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육자 대상으로 음식점 이용 예절을 포함한 양육문화 조성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⁶⁾

4) 아시아 경제(2023. 6. 26). “출산율 꼴찌국 맞나요?”...노키즈존 유행에 외산은 ‘가우뚱’,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614102997177>(2023. 10. 5. 인출).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 8. 30.).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6) 서울시 내부자료(2023). 2023년 서울키즈 오케이존 추진.



[그림 1] 서울시 키즈 오케이존 부착 스티커

라. 국회 입법 동향

최근 국회에서도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180호), 동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안 제36조의2 신설)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⁷⁾는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은 사실상 노키즈존의 반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긍정·부정 어감을 떠나 ‘키즈존’ 자체가 아동 유해시설도 아닌 식당 같은 보통의 공간에서 아동의 입장 허가 여부를 확인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바, 아동친화업소 지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보건복

지부 역시 아동친화업소를 지정·운영할 경우 미지정 업소의 아동 입장 불가가 당연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등 역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동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4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아동출입제한업소(이하 “노키즈존”이라 함)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업자가 노키즈존을 지정·운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동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다가, “노키즈존 지정금지”를 “확산방지 및 인식개선” 등으로 수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3. 9). 제410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성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3180호). p. 70.

정하는 등 제명수정과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23년 9월 21일에 수정·가결 되었다.

3. 노키즈존 사업장 운영 실태 및 요구

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이 조사는 205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76.1%)과 음식업(18%)에서 활동한다. 사업장은 주로 경기도(22%), 경상북도(14.6%), 서울(13.2%)에 위치하며, 중소도시(40.5%), 대도시(32.7%), 읍면지역(26.8%) 순으로 분포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5년 미만(64.9%) 운영되었고, 하루 평균 10.16시간, 한 달에 27.68일 운영한다. 주요 이용 고객은 30대(67.3%)와 40대(60.5%)이다. 사업장 면적은 평균 157.25평, 테이블 수는 평균 28.64개이다. 배상보험에는 82.4%가 가입했으며, 노키즈존 외에 다른 제한사항을 두는 경우는 64.4%다. 점주의 연령대는 주로 30대(41.5%), 성별은 여성(53.7%), 남성(46.3%)이고, 자녀가 있는 점주는 54.1%다.

〈표 1〉 조사 대상 사업장 기본 특성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205)	점주 연령		
사업장 형태			20대	9.3	(19)
음식점업	18.0	(37)	30대	41.5	(85)
커피/휴게음식점/제과점업	76.1	(156)	40대	21.0	(43)
애견 카페 등	3.9	(8)	50대	19.0	(39)
기타 업종*	2.0	(4)	60대	9.3	(19)
사업장 형태-세부			점주 성별		
한식 음식점업	3.9	(8)	남성	46.3	(95)
서양식 음식점업	8.3	(17)	여성	53.7	(110)
일식 음식점업	4.4	(9)	점주 자녀유무		
중식 음식점업	1.0	(2)	자녀 있음	54.1	(111)
치킨 전문점	0.5	(1)	자녀 없음	45.9	(94)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	74.6	(153)	사업장 운영 기간		
제과점업	1.5	(3)	5년 미만	64.9	(133)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소매업	3.9	(8)	5~10년 미만	27.3	(56)
숙박업	1.0	(2)	10~15년 미만	4.9	(10)
가족제품 중개업	0.5	(1)	15~20년 미만	1.0	(2)
기타*	0.5	(1)	20년 이상	2.0	(4)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신고 면적		
서울특별시	13.2	(27)	평균	519.85m ² /157.25평	
부산광역시	8.8	(18)	사업장 테이블 수(숙박업 제외)		
대구광역시	9.8	(20)	평균	28.64개	
인천광역시	2.9	(6)	사업장 객실 수(숙박업)		
광주광역시	-	-	평균	4.5개	
대전광역시	-	-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울산광역시		-	사업장 주요 고객 성별		
세종자치시	0.5	(1)	남성	25.9	(53)
경기도	22.0	(45)	여성	74.1	(152)
강원도	6.8	(14)	사업장 주요 고객 연령*		
충청북도	2.0	(4)	20대	47.3	(97)
충청남도	7.8	(16)	30대	67.3	(138)
전라북도		-	40대	60.5	(124)
전라남도	2.0	(4)	50대	33.7	(69)
경상북도	14.6	(30)	60대	9.8	(20)
경상남도	9.8	(20)	사업장 상권		
제주도		-	관광지	29.3	(60)
사업장 운영 지역 규모			주거지	51.2	(105)
대도시	32.7	(67)	기타*	19.5	(40)
중소도시	40.5	(83)	배상보험 가입 여부		
읍면	26.8	(55)	가입	82.4	(169)
하루 평균 영업 시간			미가입	17.6	(36)
평균(시간)	10.16시간		노키즈존 외 제한사항		
한달 평균 영업 일수			없음	35.6	(73)
평균(일)	27.68일		있음-노펫	64.4	(132)

주1: '사업장 형태' 기타 응답은 '사업장 형태-세부'에서 '숙박업', '가족제품 중개업', '기타'에 해당함

주2: '사업장 형태-세부' 기타 응답은 라탄공방 1케이스

주3: '사업장 주요 고객 연령'은 중복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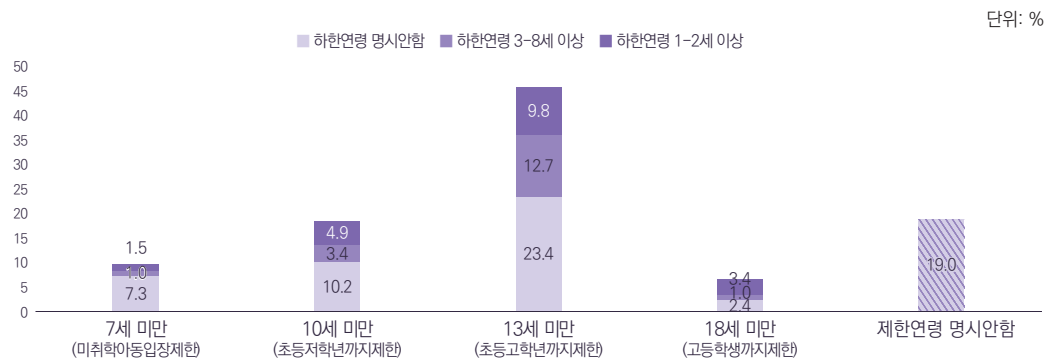
주4: '사업자 상권' 기타 응답의 경우 오피스 9케이스, 대학 및 학원가 6케이스, 교외 16케이스, 농어촌 9케이스

주5: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2) 노키즈존 적용 범위

현재 노키즈존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전체를 다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2.4%,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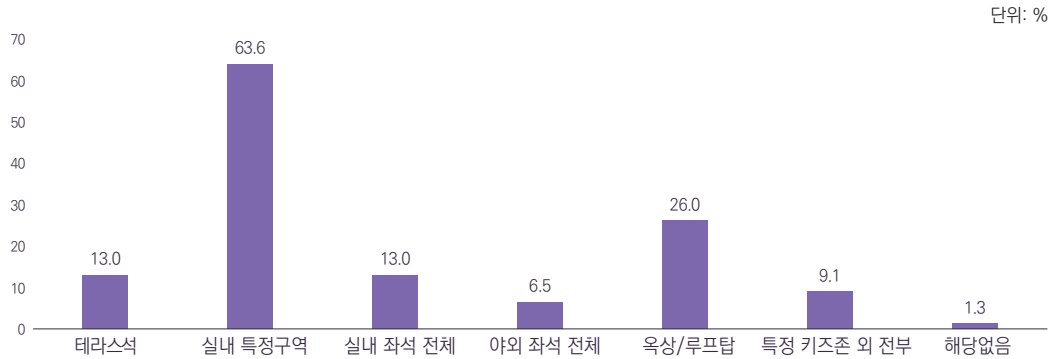
경우는 37.6%로 나타났다.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 그 범위가 제각각이며, 명확하지 않았다.



[그림 2]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인 경우) 노키즈존 운영 제한 연령(n=205)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집 중 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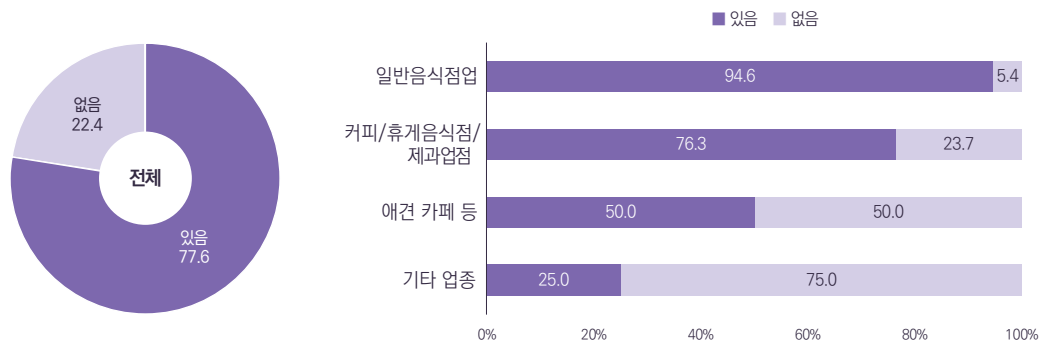
[그림 3] (일부 구역/시간/상황만 노키즈존인 경우) 노키즈존 운영 제한공간(중복응답)(n=77)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이용 공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노키즈존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실내의 특정구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옥상/루프탑 26%, 실내좌석전체 13%, 테라스석 13%, 특정하게 이용가능존을 지정하고 그 외 전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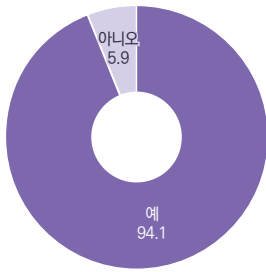
노키즈존 운영 시 제한적으로 아동 출입 허용되는 상황에 대해 보호자가 아이의 모든 행동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18.5%,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11.7% 등으로 나타났다. 노키즈존으로 사업장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아이를 출입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6%, 그런 요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22.4%로 거의 열명 중 여덟명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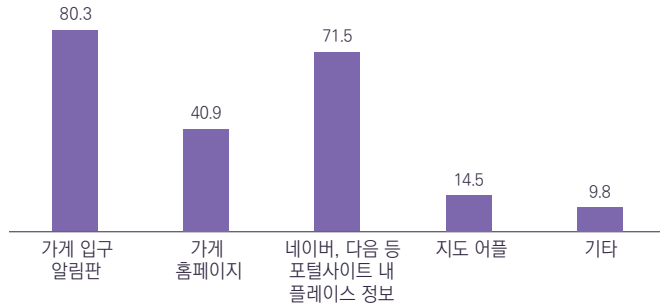


[그림 4] 사업장에 아이 출입 요구받은 경험(n=205)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노키즈존 명시 여부(n=205)



(노키즈존 명시하는 경우) 노키즈존임을 안내하는 방법(중복응답)(n=193)

[그림 5] 가게 앞/웹게시판/지도 어플에 노키즈존 명시 여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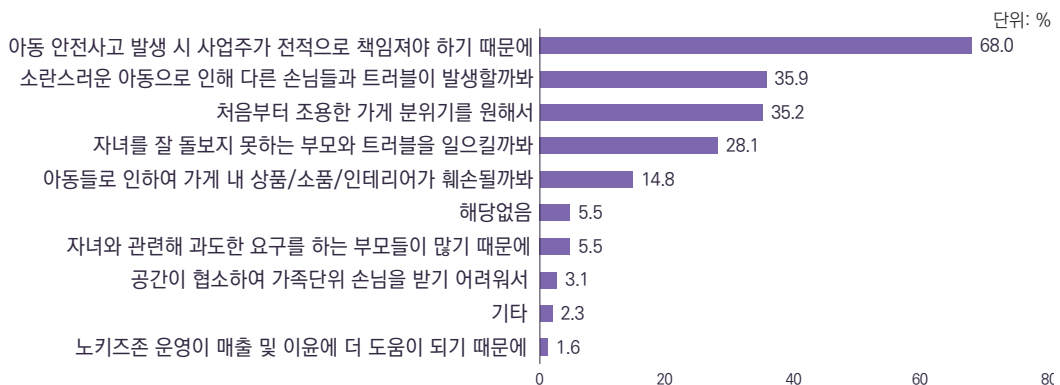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3) 노키즈존 공지 방식

사업장이 노키즈존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시하는 경우가 94.1%로 나타나, 대부분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키즈존임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41.7%, 고객이 부정적으로 인식할까 우려되어서라는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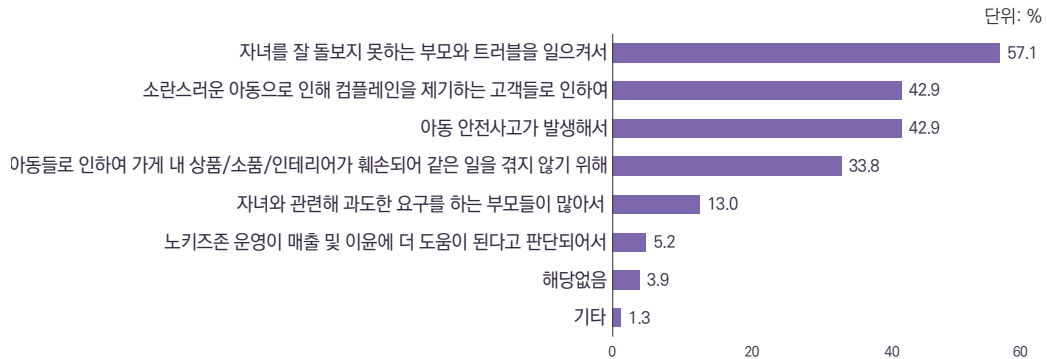
4) 노키즈존 운영 적용 시기 및 사유 등

개업 처음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62.4%, 운영 중간에 노키즈존으로 변경한 경우는 37.6%로 조사되었으며, 개업 처음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한 사업장들에 대해 이유를 물은 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68%,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과 트러블이 발생할까봐' 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위해서' 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트러블을 일으킬까봐' 28.1%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개업 시 노키즈존으로 운영 결심 이유: 1+2순위(n=128)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7] 가게 운영 중간부터 노키즈존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1+2순위(n=77)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가게 운영 중간부터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트러블을 일으켜서 노키즈존으로 전환' 하였다는 것이 57.1%로 가장 주된 이유이며 다음은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노키즈존으로 전환,' 42.9%,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과 트러블이 발생할까봐' 42.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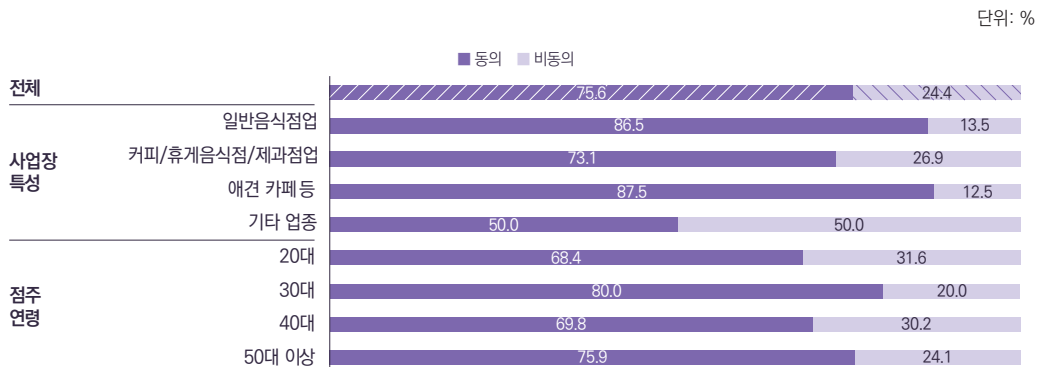
5) 지원 요구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키즈존 명단 공개(온라

인 게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7%가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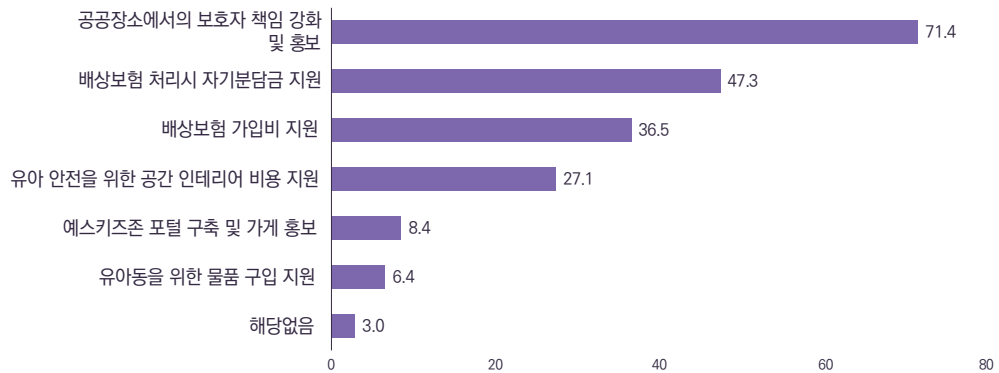
노키즈존을 미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도움이 될 혜택 및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라는 의견이 71.4%로 월등히 많았고, 다음은 '배상보험 처리 시 자기분담금 지원' 47.3%,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36.5%로 배상보험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



[그림 8] 노키즈존 명단 공개(온라인 게시)에 대한 생각(n=205)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9] 노키즈존 미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움이 될 혜택 및 제도 된 이유: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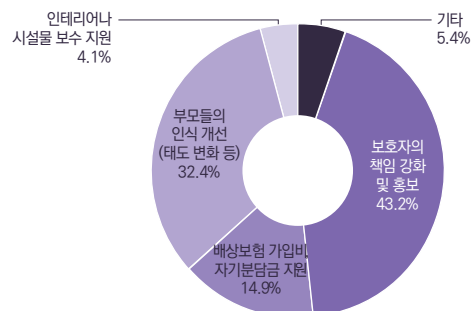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책임 강화 및 홍보' 43.2%, '부모들의 인식 개선 (태도 변화 등)' 32.4%, '배상보험 가입비, 자기분담금 지원' 14.9%, '인테리어나 시설물 보수 지원' 4.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련 법규 법제화', '관리 전담 안전 직원 상주'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나. 사업주 대상 면담 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사업주 13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운영형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 노키즈존을 하지 않기 위한 조건, 케어키즈존 운영에 대한 의견, 노키즈존 관련 정책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묻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단위: %

[그림 10]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n=74)

주: 김아름 외(2023). 지역사회 양육 친화 문화조성 연구.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표 2〉 사업자 심층면담 응답자 정보

사례	연령대	성별	사업장 분류	노키즈존 형태	비고
사업자1	30대	여	커피전문점	[전체] 초등이하 제한	배상경험X 케어키즈존 의향O 20-30대 여성, 인테리어
사업자2	50대	남	커피전문점	[전체] 초등이하 제한	해변가 카페
사업자3	30대	남	커피전문점	[부분] 1-7세 출입제한, 8-12세 1층만 이용	현재는 노키즈존 운영 안함 전연령대상 카페
사업자4	30대	여	커피전문점	[부분] 1층 전체허용 2층 10세이상 출입	계단앞에 2층 노키즈존 안내팻말 2층 노키즈. 노펫
사업자5	40대	여	제과점업	[부분]루프탑 미취학아동제한	20대-40대 여성 타겟
사업자6	40대	남	일식 음식점	[전체]11세 이하 출입 제한	중간에 변경 노키즈존 여부 공개
사업자7	30대	남	제과점업	[부분]1,2층 전체 3층, 루프탑 초등이하 제한	-
사업자8	30대	남	커피전문점	[전체]1학년이하 출입제한	-
사업자9	20대	여	애견 카페	[전체] 만12세 이하 펫, 부모동반 아닐 시 출입제한	만12세 이하의 경우도 본인 펫과 부모가 함께 동행하면 입장가능
사업자10	30대	남	제과점업	[부분]1층 가능 2층 노키즈존	상황에 따라 케어키즈존으로 안내하기도 함
사업자11	30대	여	커피전문점	[전체] 보행가능영아부터 12세까지 출입제한	펫가능
사업자12	60대	남	일반음식점	[전체]3학년 이하 출입제한	연령구분 없고, 주택가에 조용한 공간, 노펫
사업자13	40대	여	커피전문점	[전체]만12세 미만 출입제한	20-50대 고객층

면담에 참여한 13명의 사업자 중 8명이 사업장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5명은 부분만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3명의 사업자 중 7명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3명이 제과점, 2명이 음식점, 1명이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6명, 40대 4명, 50대, 60대 각각 1명이 참석하였다.

2) 노키즈존 운영 현황

면담에 참여한 사업주 중 개업 시에는 일반 매장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노키즈존으로 변경한 경우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였다.

가장 큰 거는 10명의 손님이 오시면 9명은 다 좋은 분들인데 이제 한 분들이 아예 아기를 케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소품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청소하다 보면 그게 부러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1]

첫 번째는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일례로 여기 와서 킥보드를 타거나 또 그렇게 또 지나치게 물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보시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후로 이렇게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2]

카페공간을 이용하는 부모와 사업자 간의 인식차이의 문제도 있었는데, 사업자의 경우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모는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쉬며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고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손님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이들이 야외가 넓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캐치볼을 한다든지 매장 마당에서 그리고 공 같은 거 가져와서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사업자7]

부모님들 입장도 입장이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손님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소란스럽게 했을 때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야 시끄럽다 좀 앉아 있어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그냥 엄마들이 '이제 여기 왔으면 난 이 공간을 좀 약간 즐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서 누군가 이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조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키즈존이라는게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자4]

3) 노키즈존 운영 경험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장점으로서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신경 쓰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었다.

좋은 점은 확실히 이제 제가 바쁜 와중에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이제 부모님들과 얼굴을 붉힐 일은 없으니까 그런 점은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손님들이 조용한 시간 제가 카페가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이다 보니까.. [사업자1]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소음 같은 것도 확실히 좀 줄어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훨씬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사업자3]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아기들이 좀 없다 보면 확실히 안전에 좀 신경 쓰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장 관리를 하다 보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장 입장에서 아이들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되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사업자3]

애들을 돌보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고요.[사업자12]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애로점으로는 아이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노키즈존을 시행했지만, 모든 아이 있는 가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1층에는 이제 키즈, 2층에 노키즈존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편하게 드시고 싶으신 손님들이 1층을 많이 이렇게 계단이 많으니까 또 계단이 불편해서 안 올라가시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이 다 찼는데 키즈 동반하시는 손님들이 오셔서 테이블이 없어서 이제 조금 돌아가실 때가 있어서 그때는 조금 저도 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사업자4]

아무래도 노키즈존을 하면 돌아가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손님들한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사업자12]

이에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부모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손님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공개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노키즈존임을 명백히 공지하고, 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네 그런 거는 당연히 공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 데리고 온 손님들한테 여기는 노키즈존이니까 나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시작할 때는 이제 노키즈존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공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사업자3]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미리 안내가 되어 있으면) 안 들어오실 수 있고 차라리 앞에서 안내를 해야지 안 되는구나 하는 저희는 온라인 상에서 다 그렇게 해냈거든요..(중략)..그렇죠 괜히 왔다가 또 노키즈존이라고 그러면 또 손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처음부터)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자6]

반면, 인터넷상에 노키즈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을 걱정하여, 아이가 왔을 때만 구두로 안내해 주고 공개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따로 인터넷이나 그런 데를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지역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홍보를 하면 지역에서 말이 돌았을 때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1]

동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약에 케어키즈존이 된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또 부모님이 다 책임지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상 부담이 가장 큰데 케어키즈존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잖아요.[사업자1]

케어키즈존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사업자4]

케어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아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도 이제 항상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데려오시는 손님들이 있으면 좀 주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아이들 뛰어노는 거를 더 좋아하지 이렇게 막 제지하고 하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사업자3]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과 연장선상에서 나아가 공공장소에서의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의견

부모가 아동에 대한 케어를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입장을 하게 되는 ‘케어키즈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매장내에서 사고가 있을 경우 부모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법적 효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케어키즈존이 원활하게 운영 되려면 부모의 인식변화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부모 인식변화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아

부모님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런 공공장소랄지 이런 데에서 해서는 안 될 일 또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알고 또 옆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의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이런 데 와서까지 그런 것들을 제재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중략)..일단은 남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만 또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부모들의 인식 변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훈육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쳤을 때 부모의 책임[사업자2]

일단 먼저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사업자3]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조금 더 케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떠들거나 했을 때 좀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만약에 책임 여부에 그런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아니면 애가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다쳤거나 이랬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조금 케어를 조금 덜 해서 내가 조금 더 봤으면 애가 안 다쳤을 건데 약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사업자4]

또한,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려면 먼저 아동동반 부모와 사업자, 또한 부모와 다른 손님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 아이들이 조금의 약간의 피해를 끼치더라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사업자1]

아기들이 보통 한 사회가 아기를 도와서 키워야 된다 이한다고 하지만 요즘엔 정말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이상은 진짜 완전한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이 왜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무리 아기여도[사업자1]

업주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 이런 세 단위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이해 합의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업주는 업주로서 다른 손님들은 또 우리가 요즘 저출산 문제도 있고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해 대책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업자12]

5) 노키즈존에 대한 지원 요구

노키즈존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노키즈존을 합법화하는 방향보다는 손님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배려한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저는 그냥 이거를 너무 법제화 하는 것도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곳은 노키즈존 나는 여기는 못 간다 근데 난 여기서도 가고 싶은데 너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못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자율적으로 이제 그 사업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공간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케어키즈존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사업자4]

그거는 저도 딱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어떤 제도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사업자9]

반면, 카페나 음식점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우선 인식을 많이 바꿔야겠죠 사람들의 인식을 그런 선입견을 많이 깨줘야 될 것 같고 노키즈존 하면 우선 딱 부정적으로 먼저 다가오잖아요.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많이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사업자5]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배상 및 보험 처리를 진행할 일이 있을 경우 업주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상황에 대한 상담을 한다거나 필요시, 보험처리 관련한 이러한 진행을 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봐서는 노키즈존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만약에 물건이 잘못되면 소비자보호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서 거기에서 또 법리적으로도 이야기해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노키즈존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해주는 그러한 센터랄지 아니면

지원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랄지 아니면 나머지 것들 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자2]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배상 보험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상 보험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치료받지 또 추후에 있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배상 가격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흉터가 생기면 그게 평생 갈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요.[사업자2]

4. 노키즈존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

가. 노키즈존에 대한 갈등관계 현황

앞서 살펴본 인식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와 자녀가 있는 고객, 그리고 해당 공간에 있는 고객 3자 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공공 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들 수 있는데, 식당에서 아이의 토사물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1인분을 주문하고 소분해 달라고 하는 경우, 기저귀를 테이블 위 또는 트레이에 반납하는 경우, 매장 내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버리는 경우 등이 인터넷상에 회자된 바 있다. 반면,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연령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노키즈존 이슈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기본권 침해와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 간의 충돌문제로 본다. 영업의 자유에는 영업대상을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되지만, 이와 같은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체적 수단(부모 및 아동에 대해 이용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자리배치, 공간 분리 운영 등)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괄적인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견상 기본권 충돌로서 사업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아동과 부모의 보편적 권리가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권보다 우선시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행동자유를 우선시하는 입법방식을 택하는 것은 소규모 영세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평등권 침해 문제(실질적으로 공간 분리 운영 등이 불가능한 소규모 영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규제를 적용한 경우)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노키즈존 운영형태에 대한 제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이 경우 영업의 종류, 영업의 규모, 인력 형태 등을 고려하여 법의 간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

〈표 3〉 노키즈존 찬반 논거

찬성하는 논거	반대하는 논거
•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으므로 •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 아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자녀와 관련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많으므로 • 영업의 자유에 따라 노키즈존은 사업주의 권리이므로 • 아동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매장 내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크므로	•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차별이므로 •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조치이므로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보다 아동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노키즈존 이슈에 있어서 3자간의 입장을 갈등관계로 보거나 배척, 배제하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 아동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위한 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공공장소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의 아동 출입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러한 아동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⁸⁾

노키즈존은 특정 대상인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전면적인 아동 출입 금지 대신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꿀 것을 제한하였다.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별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노00존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노시니어존, 노외국인존과 같이 특정인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낮은 반면, 노유티버존, 노스터디존과 같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한국리서치, 2023. 2. 22). 이는 사회적으로도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주의 권리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케어키즈존, 노매너존

과 같이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아동을 동반한 고객으로 인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 예컨대, ‘뛰는 행동 금지’, ‘소란 행위 금지’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또는 퇴장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⁹⁾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 전반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경험을 갖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아동을 동반하는 손님보다는 아동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다 보니, 아동을 동반한 고객들을 거부하더라도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매장 운영의 편의성, 테이블 당 매출 단가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점차 노키즈존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0.7명으로까지 떨어지고, OECD 국가 중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여 국가소멸위기에 해당하게 된 지금, 아이 한명 한명이 소중한다는 생각에서 좀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사업장을 위한 지원 방안

1) 배상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2011년 열 살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부딪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부산지법은 2013년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법원은 부모가 단속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한정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2012년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 8. 30.),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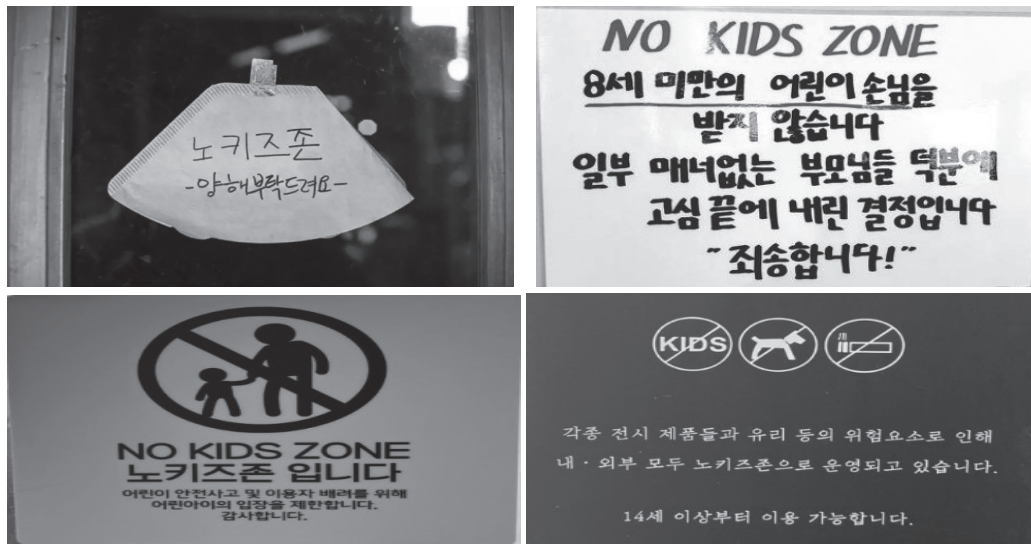
9) 이에 대해서는 ‘조정의(2023).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국회토론회 자료집. p. 52’ 참조.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운반하던 중 유모차에 탄 아기에게 국물을 쏟아 아기 허벅지에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14년 의정 부지방법원 역시 식당의 책임을 70%로 보아 업주가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노키즈존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사업주는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관리하고, 이물질이나 적치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업장 내 안전사고는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이에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안전사고 문제를 노키즈존 운영 사유로 들고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개업 시 노키즈존으로 운영

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8%를 차지하였다. 또한, 면담 시에도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한 배상 책임소재 방안 마련, 배상 문제 발생 시 절차적 지원창구 마련 등을 주요 지원사항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장 컨설팅과 사고 발생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당이나 카페 사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업종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참조). 해당



[그림 11] 노키즈존 게시 예시

자료: 구글에서 노키즈존 이미지를 검색하였음(2023. 10. 31).

중앙회와 협회는 각 지역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컨설팅 및 배상 문제를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아동 친화적인 디자인 지원·배포 및 공간 마련 지원

현재 각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키즈존 안 내판은 정해진 도안 없이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아이 모습에 금지 표시를 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디자인들 중에는 반려견 출입, 흡연 금지 등과 동일선상에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 대상인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아동을 혐오의 대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즉, 아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사물이나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¹⁰⁾

업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역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용이 저렴한 도안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특정 공간의 출입을 제한하는 도안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사업주가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역 지정은 반대로 역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스키즈존 또는 오케이키즈존과 같이 특정 이름을 붙이기보

다는 보편적인 매장의 한 유형으로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사회적 지원 방안: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 공간 조성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아이들이 놀 곳이 부족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카페에 와서 뛰노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 면담에서도 만약 공공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카페 같은 곳을 찾아가갈 이유가 없다고 답하였다.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¹¹⁾ 서울 내에 어린이 공원 같은 공공놀이터는 1,600개인데, 구에 따라 적게는 어린이 250여명, 많게는 730여명 당 하나씩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놀이터를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10년간 만들어진 놀이터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있으며,¹²⁾ 지역 사회 내에 있는 공공놀이터는 의무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 장소가 부족하고, 키즈카페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입장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공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만큼¹³⁾, 아동들과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10) 김도균·유보배(2016.2.17.).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p. 9.

11) KBS 뉴스(2023. 10. 16). [친절한 뉴스K] '놀 데 없는' 아이들...놀이터가 사라진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912&ref=A\(2023. 10. 31. 인출\)](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912&ref=A(2023. 10. 31. 인출)).

12)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놀이시설은 8만119곳, 이 중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과반이 넘는 4만2,436곳을 차지하며, 재학생들에게만 열려 있거나 혹은 시간에 따라 재학생들에게도 열려있지 않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내에 위치한 시설이 2만2,073곳, 각종 유료시설 등을 제외한 열린 놀이시설은 1만 곳에 불과함. 놀이시설 8곳 중 1곳만이 경제·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대해서는 '한국일보(2023. 8. 5), 아이들에게 허락된 공간, 어린이공원... 부족한데 오히려 줄고, 쫓겨나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315190001827?did=NA\(2023. 10. 31. 인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0315190001827?did=NA(2023. 10. 31. 인출)) 참조.

13)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Ⅰ):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51.